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34
----------	------

제출연월일 : 2020. 10.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료 등의 조정 단서조항 정비(안 제4조)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를 5퍼센트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

나. 점용료 등의 납부기간 예외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천재지변 및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용료 등의
납부기간 유예 또는 별도 지정 가능

다.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 연 6퍼센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

라. 점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 반환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

마. 징수교부금 정비(안 제11조제2항)

-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 100분의 5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바. 허가수수료의 징수 조항 삭제(안 제12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하천법」 제89조 삭제)

사.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 경작 목적 점용 산정기준 요율 변경 : 100분의 1 → 100분의 2.5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 하천수사용료 산정기준 : 1일 허가수량×부과기간×용도별 단가 적용
다만,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용량 적용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아.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등(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21. ~ 10. 1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천사용료및”을 “하천사용료 및”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2. 하천수 사용허가
3. 하천점용허가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점용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 6퍼센트의”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영 제107조제1항제1호”를 “영 제10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40”을 “50”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 중 “1”을 “2.5”로 하고,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수사용료	<p>가.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 나, 다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 가능</p> <p>다.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p> <p>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p> <p>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m³)</p> <p>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³)</p> <p>4)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p>
-----------	--

별표 1의 9호란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1m²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	80퍼센트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 등”라 한다)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대구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 ----- 하천사용료 및 ----- -----.</p> <p>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2. 하천수 사용허가 3. 하천점용허가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② (생략)</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 만원을 초과(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연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 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점용료 등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

② -----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7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0조(과태료 징수)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생략)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

① (생략)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제1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징수) ① -----

영 제105조제1항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50

<삭제>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대구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군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제3조 또는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6. 6. 28., 2020. 7. 31.>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 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 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 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21.][시행일 : 2021. 1. 1.] 제57조제2항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1. 16., 2009. 12. 15., 2017. 9. 19.>

-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타. 삭제 <2016. 7. 19.>
 -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거. 삭제 <2016. 7. 19.>
 -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2. 8.>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p>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p>3. 하천시설의 점용</p>	<p>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p>												
<p>4. 선박 등의 운항</p>	<p>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p> <p>1) 갑지: 월액 20,000원</p> <p>2) 을지: 월액 10,000원</p> <p>3) 병지: 월액 6,000원</p> <p>※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p> <p>나. 5톤 이하 유선</p> <table border="1" data-bbox="560 768 1361 938"> <thead> <tr> <th>지역등급</th> <th>동력선</th> <th>무동력선</th> </tr> </thead> <tbody> <tr> <td>1) 갑지</td> <td>월 100,000원</td> <td>월 50,000원</td> </tr> <tr> <td>2) 을지</td> <td>월 60,000원</td> <td>월 30,000원</td> </tr> <tr> <td>3) 병지</td> <td>월 20,000원</td> <td>월 10,000원</td> </tr> </tbody> </table> <p>※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p> <p>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p> <p>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p> <p>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p> <p>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p> <p>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p> <p>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p> <p>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p> <p>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p> <p>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p> <p>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p> <p>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p>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p>5. 토석·사력의 채취</p>	<p>가.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p> <p>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p>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p>※ 비고</p> <p>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2. 시·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p> <p>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p> <p>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p> <p>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p>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 3. 2., 2020. 7. 31.>
 -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7. 3. 2., 2018. 6. 26., 2020. 7. 31.>
 -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 3. 2., 2020. 7. 31.>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 1호에 해당함

4. 작성자 :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김영철